

운수종사자 복장 준수사항

○ 권장 복장

- 운전복 : 자율
- 상 의 : 와이셔츠 또는 카라 티셔츠로 하되 추가복장(조끼, 잠바)을 덧옷으로 사용가능
- 하 의 : 단정한 신사복 형태
- 신 발 :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 착용
- 넥타이 : 착용 여부는 운송사업자가 자율 결정
- 모 자 : 손님이 운전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운송사업자가 자율 결정
- 기타
- 인천지방경찰청의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질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소속 단체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간주

○ 금지 복장

- 상 의
쫄티, 소매 없는 셔츠(민소매), 러닝셔츠
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
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드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
 - 하 의
반바지, 칠부바지, 췌리닝,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
 - 모 자
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
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
 - 신 발
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신발류
뒷 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,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
- ※ 금지 복장 착용 시 행정처분
과태료 10만원